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 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리뉴시스템(이종용)		
	주 소	우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405호		
	전화번호	02-414-0700	팩스번호	02-414-4004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40호
- 명 칭 :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
- 기술분야 : 건축 > 방수 >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
- 내용요약
이 신기술은 ①친환경+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(터보시트 GTR),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(Pre-GTR),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(Joint Roller)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(GTR Gel) 개발,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·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,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“온통 GTR 외방수공법”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‘터보시트 GTR’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‘Pre-GTR’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‘온통 GTR 외방수공법’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4.08.19. ~ 2028.08.18.(14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